

# 생활관 관생수칙

2013. 3. 1

(개정 2017. 12. 6.)



## 생활관 관생수칙

제 1 조(목적) 본 수칙은 연성대학교 생활관 관생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써 규칙적인 공동생활, 교양의 함양 및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근거) 본 수칙은 연성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제5조에 근거한다.

제 3 조(관생의 의무) 관생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관생수칙 및 생활관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2.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.
3. 화재예방, 도난방지 등 생활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.
4. 생활관장, 사감의 지도와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.

제 4 조(통보의무)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즉시 관장 또는 사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생활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
2. 화재, 풍수해, 도난, 응급환자,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
3.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 5 조(관내생활) 관내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.

1. 생활관은 05:00에 개방하고 24:00에 폐문하며, 폐문시간 이후 출입을 금한다.
2. 외부인의 출입 및 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.
3. 관생은 항상 바른 예절로 직원 및 선배와 동료들 대하여 하며,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4.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5. 관생은 출입카드 관리 등 도난 사고에 대비해야 하며,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 책임을 진다. 도난 사고에 대하여 생활관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6 조(출입카드) 출입카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.

1. 출입카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, 외출 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고,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2. 관생은 출입카드 분실 시 운영사무실에서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, 별도의 재발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3. 관생은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, 퇴사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호실배정)①호실 배정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배정된 호실은 관생 임의로 변경을 금한다.

연성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

②호실 배정 방법은 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.

③관생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싶은 동료가 있을 경우에는 신입생은 입사신청서 제출 시, 재학생은 선발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룸메이트 신청서(서식6)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 8 조(입사 및 퇴사) ①관생의 생활관 정기 입사, 퇴사에 관한 사항은 매학기별로 생활관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함)이 결정한다.

②관생은 입실 시 서약서(서식2)를 제출하고, 입실 및 물품확인을 하고 물품확인서(서식3)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③생활관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하는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, 중도퇴사를 희망하는 자는 퇴사 7일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퇴사신청서(서식4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관장은 해당 관생의 방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사조치 한다.(수정 2017.12.06.)

⑤관생은 퇴사 시 내부 시설 및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확인서(서식5)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⑥ ⑤항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한다. 무단퇴사 시 재입사를 제한한다.(신설 2017.12.06.)

⑦시설보증금은 호실 비품 및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정산 환불한다.

⑧중도 입·퇴사에 관한 세부 규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9 조(인원점검 및 점호) 인원 점검 및 점호는 층장에 의해 취해짐을 원칙으로 한다. 인원 점검 및 점호는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.

1. 주 1회 지정일 23:30에 실시하며 각자의 호실에서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.
2. 특별 인원점검 및 점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, 생활관 사감(이하 “사감”이라 함)의 권한으로 실시하며, 점검내용은 인원점검 및 환경정리, 일일 지시사항 전달, 비품 및 시설물 파손상태 점검 등을 포함한다.
3. 인원점검 및 점호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, 당일 14:00까지 운영사무실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.
4. 관생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. 또한 생활관내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, 화재,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관생이 부재시에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 통지한다.(수정 2017.12.06.)

제 10 조(외출 및 외박) 외출 후 귀사 시각은 23:30이다.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사무실로 사전에 연락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

연성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

한다. 외박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.

1. 외출 및 외박은 운영사무실에 비치된 외출 외박 대장에 기재한 후 실시한다.
2. 특별한 사유나 허가 없이 1주 이상 무단 외박자는 퇴사 조치한다.

제 11 조(면회) 면회는 생활관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, 면회시간은 09:00~21:00로 한다. 면회자가 관생 방에 입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나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 면회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사감의 승인을 얻어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한다.

제 12 조(변상)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
2. 시설 및 기물 훼손
3. 비품, 일반용품 훼손 및 분실

제 13 조(게시물) 모든 게시물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.

제 14 조(금지행위) 관생은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사용권의 양도, 전대,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
2. 생활관내에서의 음식조리, 음주, 폭행 및 도박 행위
3. 전열기, 취사기구, 인화물질,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
4. 생활관내 흡연 및 소음발생 행위
5.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,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
6. 낙서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7. 사감의 허가 없이 이성이 거주하는 층을 방문하는 행위
8. 애완용 동물의 사육 또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
9. 기타 관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제 15 조 (상·벌점 및 징계) ①관장은 본 수칙 제14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상·벌점 부과 기준은 <별표1>과 같다.

② ①항의 벌점기준에 의한 징계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강제퇴사 조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관장은 규칙의 위반 정도가 학교의 질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.

가. 경고처분

- 벌점이 3점 이상인 경우
- 경고처분이후 벌점은 2배로 함.

나. 강제퇴사 조치

- 생활관 운영기준 제 19 조에 해당하는 자

연성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

- 강제퇴사항목에 해당하거나 별점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자
- 학과 수업에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등 학업에 태만한 자(신설 2017.12.06.)

③ 징계퇴사를 당한 자는 차후 입실을 허가하지 않는다.

제 16 조(기타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 <별표1> 상·별점 기준표

상점 내용	상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선양시킨 자</li> <li>• 관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</li> <li>•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이 된 자</li> </ul>	2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활동(행사 보조 등)</li> </ul>	1점

별점 내용	별 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칙에 의거 중징계를 받은 경우</li> <li>• 사용권의 양도, 전대, 외부인에 대한 숙박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</li> <li>• 생활관 내에서 본인과 타인의 안전(정신적, 신체적)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(단체 집합, 무단 침입 포함)</li> <li>• 관장, 사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집단행동</li> <li>• 도박, 폭행, 절도, 파렴치한 행동 등 단체생활 부적격 행위</li> <li>•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</li> <li>• 남/여 이성 호실의 출입 및 숙박 행위</li> <li>• 생활관 내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(손해액 전액 변상)</li> <li>• 관장, 사감 및 관계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반항하는 행위</li> <li>• 별점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인 자</li> <li>• 기타 관장이 퇴사를 명한 자</li> </ul>	강제 퇴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정된 호실을 관생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</li> <li>• 타인의 휴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(호실 무단 이동 행위 포함)</li> <li>• 출입카드 대여 행위</li> <li>• 생활관내 흡연,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</li> <li>•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 입실하는 행위</li> <li>•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(비상계단, 월담, 직원전용 게이트 등)</li> <li>• 생활관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</li> <li>•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,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(손·망실액 전액 변상)</li> <li>• 점호를 받고 무단으로 생활관을 이탈하는 행위</li> </ul>	5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단외박 행위</li> <li>• 전열기, 취사기구, TV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</li> </ul>	3점

연성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활관 내에서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(과도한 애정행위 등)</li> <li>• 생활관 내의 소란 및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</li> <li>• 만취상태로 생활관에 들어오는 행위</li> <li>•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(택배물 포함)</li> <li>• 배달음식을 호실내로 배달 요청하는 행위</li> <li>• 애완동물의 사육 행위</li> <li>• 폭언, 근거 없는 비방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(인터넷 포함)</li> <li>• 계단, 난간 등에서 위험한 행위</li> <li>• 퇴사 시 호실 청소와 정리정돈 불이행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단으로 생활관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행위 (오리엔테이션, 점호, 소방훈련 등)</li> <li>• 점호 불참 및 생활관 통제시간 위반 행위</li> <li>•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</li> <li>• 공용 공간에 대하여 이용제한시간 이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(e-라이브러리, 휘트니스룸, 글로벌 라운지, 세탁실, 카페테리아 등)</li> <li>• 게시물 훼손, 낙서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하는 경우</li> <li>• 호실 청소상태 불량</li> <li>• 호실 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행위</li> <li>• 생활관 내에서 침이나 가래를 뱉는 행위</li> <li>• 기타 관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, 생활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</li> </ul>	2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상키 3회 이상 대여하는 행위</li> <li>• 창문을 개방하고 장시간 냉·난방기를 작동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</li> </ul>	1점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